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2. 15 선고 2022가단52942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

담당변호사 조성훈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

변 론 종 결 2023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3. 12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 사이에 2022. 2. 8. 여주시 E 임야 3,490㎡(이하

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은 37,734,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7,734,06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C,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,500,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8. 11.경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3개 동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 337,734,06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, 피고 D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로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 D는 2022. 2. 8. 피고 회사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.

나. 판단

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D가 2020. 9. 7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. 8. 1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이후 피고 D가 2022. 2. 8.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마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, 피고 D가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지위나 대금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(피보전채권)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. 피고 C,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C, D는 2022. 3.경부터 현재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설치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최소 세 차례 이상 훼손하여 원고에게 약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. 따라서 피고 C,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만 원(= 재산상 손해액 50만 원 + 위자료 100만 원)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, D가 2022. 3.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임상은